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26. 10.28.(수)]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8.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0. 15.

백승규·감규상·곽은정·권순재·김동엽
김원일·남호준·류성국·박강우·박연정
박해정·박현재·변보미·서명일·심임숙
오춘근·이무식·이우완·장병운·정순욱
조은우·진형익·하경석 의원(23명)

나. 회 부 일 자: 2026. 10.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10.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백승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와 연접한 읍면동에 소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시민을 농기계 임대 대상에 포함하여 창원시 농업인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 대상에 창원시와 연접한 읍면동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창원시민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2호)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 입법예고(2026. 10. 15.~ 10. 21.)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은정)

□ 개정목적

○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와 연접한 읍·면·동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임대 대상에 포함하여 농기계 임대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 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시와 연접한 읍면동에 소재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추가함

□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농기계 임대에 제한을 받는 창원시민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기계임대 대상을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사항은 지침에도 부합함

<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자율계정) 시행지침>

3. 임대대상 및 운용

○ 운 용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관외 농지에 대한 임대 범위를 인접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시와 연접한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시 경계 지역 경작자의 영농 편의와 임대사업소의 운영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대 대상 확대에 따른 농기계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임대료 수입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유지관리 비용 또한 추가로 수반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대비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창원시민의 시와 연접 읍면동 소재 경작지에 대한 임대를 허용함에 있어, 타 지자체 거주자가 창원시 관내에 경작을 하는 경우 해당 연접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경작지 인근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농지의 직접 경작 뿐만 아니라 **창원시민의 연접 지역 경작을 농기계 임대 대상으로 확대**하여 경계 지역 경작자의 영농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요 증가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 비용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동등한 임대 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행정적 보완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대체토론)요지(주요문제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

참고 관련 자료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 **근거법령** (자료제공: 농업정책과)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 **임대사업장**

사업장명	소재지	시설면적	보유 농기계
창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의창구 동읍 봉강가술로 70	1,395m^2	70종, 287대
마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1길 262-10	725m^2	54종, 174대
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진해구 성내동 476-2	190m^2	20종, 31대

▢ **임대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건,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10월)	
	임대건수	수입금액	임대건수	수입금액	임대건수	수입금액
전체	4,068	112,743	4,177	122,516	2,907	94,983
창원농기계임대사업소	3,216	83,410	3,262	91,775	2,106	70,418
마산농기계임대사업소	852	29,333	915	30,741	639	21,127
진해농기계임대사업소	-	-	-	-	162	3,438

<인접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대상 현황>

지역		임대 대상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사람	관내에 농경지만 있는 사람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O	O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 시·군의 농업인도 임차 가능
경상남도	김해시	O	X	
	밀양시	-	O	-
	창녕군	O	O	
	함안군	-	O	
	진주시	O	O	
	고성군	O	O	

자료) 지방자치단체별 조례현황 재구성

<창원시 행정구역 경계와 인접 읍면동, 인접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자료)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참조하여 재구성

<농기계 임대료 기준(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별표1)>

농기계 구입가격 / 농작업	1일 임대료 (8시간)	농기계 구입가격 / 농작업	1일 임대료 (8시간)
100만원 미만	9,000원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00원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원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원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원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원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원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원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36,000원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원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8,000원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원	4,500만원 이상	179,000원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원	콩 정선 작업 (40kg용 포대당)	1,000원

1) 산정방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농기계 1일 임대료에 각각 85%(별표 1의2 제1호다목 적용)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백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2) 반일 임대료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한다.